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6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등 ····· 2

Ⅰ.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6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5.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등

가. 개요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윤영석의원안) - 초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강대식의원안) -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김태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정부안) ○ 시행일 : 2026.1.1.(김태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공포 후 3개월 (윤영석의원안) 공포 후 6개월 (강대식의원안)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 강대식의원안 2025. 2. 14. 발의(의안번호 8178), 윤영석의원안 2025. 2. 18. 발의(의안번호 8255), 김태선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3),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76),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5건의 개정안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대식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체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윤영석의원안은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김태선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예능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정부안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각각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1)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72.1만원[2]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인정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3]한 상황에서, 하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 학생의 예체능 및 취미, 교양을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상승하여,[4] 지원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측면이

2)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3)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4)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국가데이터처, 2025.3.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맞벌이 가구 비중]

(단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맞벌이가구 비중	45.0	45.9	46.1	48.2	48.0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

교육비의 비중보다 크고 2023년 대비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023년 및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전 체	27.1조원	**29.2조원**	78.5%	**80.0%**	7.3시간	**7.6시간**
초등학교	12.4조원	**13.2조원**	86.0%	**87.7%**	7.5시간	**7.8시간**
중학교	7.2조원	**7.8조원**	75.4%	**78.0%**	7.4시간	**7.8시간**
고등학교	7.5조원	**8.1조원**	66.4%	**67.3%**	6.7시간	**6.9시간**

자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5]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5)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60%	1.0	2.4	16.7	0.4	28.4	48.9
60%~80%	1.3	3.6	18.0	0.3	31.8	55.0
80%~100%	2.3	3.1	21.1	0.2	34.1	60.7
100%~120%	1.9	4.4	25.1	0.2	36.0	67.9
120%~140%	2.4	6.0	27.8	0.9	37.1	74.2
140%~160%	2.1	5.3	32.0	1.3	38.9	79.7
160%~	2.4	8.8	41.0	4.9	45.4	102.5

*가구소득은 2024년 2/4분기 가구(1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469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및 김태선의원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5,876억원에서 최대 3조 7,77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7년~2030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누적	연평균
강대식 의원안	△3,680	△3,412	△3,141	△2,916	△2,727	△15,876	△3,175
윤영석 의원안	△3,776	△3,567	△3,328	△3,086	△2,880	△16,637	△3,327
김태선 의원안	△8,541	△8,022	△7,504	△7,048	△6,655	△37,770	△7,5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정부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년간 3,252억원(연 평균 813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간 2,979억원(연 평균 745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각각 추계함.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국회예산 정책처(A)	△838	△775	△710	△656	△2,979	△745
기획재정 부(B)	△813	△813	△813	△813	△3,252	△813
차이 (A-B)	△25	38	103	157	273	68

자료: 기획재정부

□ 참고로, 현행법상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table>
<tr><th>세목</th><th>유형</th><th>구체적 내용</th><th>근거</th></tr>
<tr><td rowspan="7">소득세</td><td rowspan="2">비과세</td><td>·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td><td rowspan="2">소득법
§12</td></tr>
<tr><td>·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td></tr>
<tr><td>소득
공제</td><td>·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td><td>소득법
§50</td></tr>
<tr><td rowspan="3">세액
공제</td><td>· 자녀세액공제
<table>
<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td></tr>
<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
</table>
<table>
<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
<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
</table></td><td>소득법
§59-2</td></tr>
<tr><td>·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td><td>소득법
§59-4②</td></tr>
<tr><td>·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td><td>소득법
§59-4③</td></tr>
<tr><td>자녀
장려
세제</td><td>·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td><td>조특법
§100-28
～
§100-31</td></tr>
<tr><td rowspan="2">부가
가치세</td><td rowspan="2">면세</td><td>·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td><td>조특법
§106</td></tr>
<tr><td>· 산후조리원 면세</td><td>부가령
§35</td></tr>
</table>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6],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7]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6)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7)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문 의 처
02)6788-5149

다.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확대(우재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 300만원	○ 교육비 한도: - (현행과 같음) - 대학생, 대학원생 : 900만원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우재준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30)

□ 개정안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연900만원까지 15%의 범위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개정안은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독립 시기

가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이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의무교육 등 근로자 자녀의 필수적인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대학원 과정은 상대적으로 선택적·전문적 교육의 영역으로 통상의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대학원교육의 특성상 지출 여력이 큰 고소득자 위주로 세액공제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이 크고,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까지 국내에서 대학원 과정은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 교육에 가까우므로 저소득층보다는 지출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접근성이 더 높은 측면이 있음.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특정 전문직의 양성을 위한 특수대학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음.

셋째, 제도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거주자의 직계비속을 주요 수혜대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대학원생은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소득 활동을 하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부양요건·소득요건

의 검증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형식적 부양을 통해 세금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넷째, 개정안의 경우 지원 연령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추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얻기 위해 대학원에 취학하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논의할 필요가 있음. 대학교 재학에 대해서도 자녀의 독립생계가 가능(20세 이상)하므로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과정이 갖는 필수적 성격[8]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을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8) 2024년 대학교 진학률 74.9%

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현행과 같음)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 - 대학생: 연 900만원/명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명	○ 공제한도 확대 - 대학생: 연 1,500만원/명 (강대식의원안)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500만원/명 (윤영석의원안) 연 400만원/명 (김태선의원안) ○ 시행일 : 2026.1.1.(김태선의원안) 공포 후 3개월 (윤영석의원안) 공포 후 6개월 (강대식의원안)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 강대식의원안 2025. 2. 14. 발의(의안번호 8178), 윤영석의원안 2025. 2. 18. 발의(의안번호 8255), 김태선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3)

□ 3건의 개정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윤영석의원안과 김태선의원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

에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강대식의원안은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1인당 공제한도 연혁]

(단위: 만원)

구 분	'99~'02년	'03년	'04년 이후	'09년 이후
취학전 아동	100	150	200	300
초중고생	150	200		
대학생	300	500	700	900

□ 윤영석의원안 및 김태선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9]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9)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72.1만원[10]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11]한 상황에서, 하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학생의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3천원으로 전년

10)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11)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대비 7.7% 상승하여,[12] 지원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돌봄부담이 높은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를 상향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강대식의원안은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생의 등록금이 점진적인 상향추세임을 고려할 때 그 공제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있음.

2024년 대학 등록금은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물가 상승 등 대학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26개교의 등록금이 인상되었음.[13] 이로 인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300원 수준으로, 다수의 대학생 자녀를 보유한 가정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윤영석의원안 및 김태선의원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

12)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국가데이터처, 2025.3.

13)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2024.4.30

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교육비의 비중보다 크며, 2023년 대비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및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한도의 확대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023년 및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전 체	27.1조원	**29.2조원**	78.5%	**80.0%**	7.3시간	**7.6시간**
초등학교	12.4조원	**13.2조원**	86.0%	**87.7%**	7.5시간	**7.8시간**
중학교	7.2조원	**7.8조원**	75.4%	**78.0%**	7.4시간	**7.8시간**
고등학교	7.5조원	**8.1조원**	66.4%	**67.3%**	6.7시간	**6.9시간**

자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 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14]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60%	1.0	2.4	16.7	0.4	28.4	48.9
60%~80%	1.3	3.6	18.0	0.3	31.8	55.0
80%~100%	2.3	3.1	21.1	0.2	34.1	60.7
100%~120%	1.9	4.4	25.1	0.2	36.0	67.9
120%~140%	2.4	6.0	27.8	0.9	37.1	74.2
140%~160%	2.1	5.3	32.0	1.3	38.9	79.7
160%~	2.4	8.8	41.0	4.9	45.4	102.5

*가구소득은 2024년 2/4분기 가구(1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469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다음으로, 강대식의원안은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다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14)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첫째,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22년 명목 대학등록금은 2008년 대비 1.0% 인상된 수준임.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 6천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임.[15] 이는 초·중등 사교육비 지출 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 시민단체가 "2020~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16]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17],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43.9%, 저소득층 29.2%, 중위소득계층은 26.9%로 나타남. 따라서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세제지원을 확대하더라도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상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15) "정보 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1.12.

16) 국가장학금은 대학 재학생의 약 90%(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기준 2024년도 전체 대학 재학생은 1,566,676명이며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약 140만명임)가 신청하고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수혜자격을 부여하므로, 해당 자료의 분석을 통해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17) "2020~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분석 보도자료", 정을호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10.14.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table>
<tr><th>세목</th><th>유형</th><th>구체적 내용</th><th>근거</th></tr>
<tr><td rowspan="7">소득세</td><td rowspan="2">비과세</td><td>·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td><td rowspan="2">소득법
§12</td></tr>
<tr><td>·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td></tr>
<tr><td>소득
공제</td><td>·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td><td>소득법
§50</td></tr>
<tr><td rowspan="3">세액
공제</td><td>· 자녀세액공제
<table>
<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td></tr>
<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
</table>
<table>
<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
<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
</table></td><td>소득법
§59-2</td></tr>
<tr><td>·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td><td>소득법
§59-4②</td></tr>
<tr><td>·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td><td>소득법
§59-4③</td></tr>
<tr><td>자녀
장려
세제</td><td>·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td><td>조특법
§100-28
～
§100-31</td></tr>
<tr><td rowspan="2">부가
가치세</td><td rowspan="2">면세</td><td>·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td><td>조특법
§106</td></tr>
<tr><td>· 산후조리원 면세</td><td>부가령
§35</td></tr>
</table>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18],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

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19]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18)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19)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 한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세수 감면규모와 조세감면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5,876억원(강대식의원안)에서 최대 3조 7,770억원(김태선 의원안)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7년~2031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20년	2031년	누적	연평균
강대식 의원안	-3,680	-3,412	-3,141	-2,916	-2,727	-15,876	-3,175
윤영석 의원안	-3,776	-3,567	-3,328	-3,086	-2,880	-16,637	-3,327
김태선 의원안	-8,541	-8,022	-7,504	-7,048	-6,655	-37,770	-7,5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

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김영진 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안 제59조의4제3항)	□ 직계비속 소득요건 삭제
○ **(적용범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현행과 같음)
- 직계비속등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 **(공제율)** 15%	○ (현행과 같음)
○ **(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 300만원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

* 김영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3),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76),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비·용돈·생활비 등을 일부 충당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재정적 여유로 인해 이러한 생활이 불필요한 가정들에 비해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비 역시 소득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직계비속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43.9%, 저소득층 29.2%, 중위소득계층은 26.9%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면세점 이하의 소득근로자의 경우 해당 개정을 통해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해당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나이 요건 외에 소득요건까지 함께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충당하는 생계형 대학생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① 직업을 가지고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고소득 성인 자녀가 학업을 일부 병행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② 직계비속이라는 요건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대학생이라

면 배우자·형제자매도 소득 유무에 무관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바. 자녀수에 따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상향(백선희 의원안, 김태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현행과 같음)
○ 세액공제율: 15%	○ 세액공제율: 20%(김태선의원안) ○ 세액공제율: 15%(백선희의원안)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자녀가 1명인 경우:20% - 자녀가 2명인 경우:30% - 자녀가 3명인 경우:40% -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50%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 - 대학생: 연 900만원/명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명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백선희의원안) 2026년 1월 1일(김태선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백선희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김태선의원안)

* 백선희의원안 2025. 6. 9. 발의(의안번호 10677), 김태선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3)

□ 2건의 개정안은 현행 15%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김태선의원안은 현행 공제율 15%를 20%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백선희의원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의 기본 공제율을 15%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안에 따라 상향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

현행	자녀 1명	자녀2명	자녀3명	자녀4명 이상
15%	20%	30%	40%	50%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먼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7년 본인의 수업료 등 공납금 지급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학생공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82년 세법개정으로 “교육비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의료비, 기부금 등과 함께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 개정안은 현행 세액공제율인 15%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일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20)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72.1만원[21]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거나(김태선의원안)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율을 설정할 경우(백선희의원안),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백선희의원안에 의할 경우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교육비 부담률을 차등적으로 경감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일수록 효능감이 높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둘째, 백선희의원안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감면율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수혜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다양한 감면제도

21)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수준이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특히 소득세의 인적공제는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22]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 수준이 높은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할 경우, 저출생 대응 유인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먼저 백선희의원안의 경우 자녀의 연령 등에 대한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라는 개념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할 경우,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가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소득 부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이는 저출생에 따른 양육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고소득층에까지 세제 혜택이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책 효과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23]

22)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23) 따라서 상향 공제율 적용 대상을 '미성년 자녀' 또는 '취학 중인 자녀' 등으로 한정하거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백선희의원안의 경우 감면율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되는데,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누진하여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타 세액공제 제도와 비교할 경우 세액공제율 20~50%는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과세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김태선의원안의 경우 지원대상, 행위유형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감면율을 15%에서 20%로 5%p 상향하고 있고, 의료비(15%)., 연금계좌(12%), 보장성보험료(12%)등 타 세액공제 제도와 비교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24],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25]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 또한 현행법상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5)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table>
<tr><th>세목</th><th>유형</th><th>구체적 내용</th><th>근거</th></tr>
<tr><td rowspan="7">소득세</td><td rowspan="2">비과세</td><td>·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td><td rowspan="2">소득법
§12</td></tr>
<tr><td>·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td></tr>
<tr><td>소득
공제</td><td>·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td><td>소득법
§50</td></tr>
<tr><td rowspan="3">세액
공제</td><td>· 자녀세액공제
<table>
<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td></tr>
<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
</table>
<table>
<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
<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
</table></td><td>소득법
§59-2</td></tr>
<tr><td>·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td><td>소득법
§59-4②</td></tr>
<tr><td>·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td><td>소득법
§59-4③</td></tr>
<tr><td>자녀
장려
세제</td><td>·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td><td>조특법
§100-28
～
§100-31</td></tr>
<tr><td rowspan="2">부가
가치세</td><td rowspan="2">면세</td><td>·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td><td>조특법
§106</td></tr>
<tr><td>· 산후조리원 면세</td><td>부가령
§35</td></tr>
</table>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백선희의원안에 따라 자녀수별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27년 2,996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조 4,528억원(연평균 2,906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백선희의원안	△2,996	△2,900	△2,811	△2,710	△2,615	△14,528	△2,9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

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감면 신설(백승아의원안, 이준석의원안)

현 행	이준석의원안	백승아의원안
□ 특별소득공제(제52조)	□ 취학 전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 신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급한 비용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현행과 같음)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제1호)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유치원, 초·중·고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액공제율: 15%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취학 전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

현 행	이준석의원안	백승아의원안
		으로 정하는 보육비 ○ 세액공제율: 30% ○ 공제한도: 연 200만원/명
	○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백승아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204), 이준석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53)

□ 두 건의 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하거나 세액공제하려는 것으로,

이준석의원안은 최대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 전체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백승아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에 대하여 인당 연 200만원 한도에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공제율 30%).

□ 먼저 이준석의원안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26]

□ 다음으로, 백승아의원안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먼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7년 본인의 수업료 등 공납금 지급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학생공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82년 세법개정으로 "교육비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

26)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의료비, 기부금 등과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은 공제대상 교육비를 ①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급식비, ③ 초·중·고 교과서대금, ④ 연 50만원 한도의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⑤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연 30만원 한도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표적인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로[27],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유형 및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118,126가구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서비스비용		
		합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962원[1)]	1,218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7,308원	4,87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3,654원	8,526원
라형	150% 초과 200%이하		1,828원	10,35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주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중 소득유형이 가형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

* 영아 종일제 서비스 기준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현황]

(단위: 가구, 시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가구	71,789	78,212	86,100	118,126
월평균 이용시간	87.9	83.1	85.6	88.1

*자료: 여성가족부

27)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크게 영아종일제 서비스(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부노딤

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선정(25.2%)[28]되는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돌봄비용 지원 효과를 가져와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성별·연령별)]

(단위: %)

구분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전체		5.1	15.7	10.2	25.2	9.3	17.1	11.2
성별	남성	6.1	17.7	11.3	20.9	10.4	18.7	8.6
	여성	4.2	13.7	9.1	29.3	8.3	15.5	13.7
연령별	25세~ 30세	6.9	19.7	12.9	26.1	8.0	15.4	7.5
	30세~ 40세	6.2	21.0	14.5	24.9	6.7	15.0	9.5
	40세~ 50세	5.4	19.1	10.3	23.0	9.5	17.3	12.4
	50세~ 60세	5.5	14.9	9.2	24.9	9.7	19.0	12.0
	60세~ 70세	4.4	12.2	8.5	27.1	10.4	17.5	12.7
	70세~	3.1	8.2	7.0	25.7	10.8	16.9	10.7

*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2024

28) 「2023년 가족실태조사」,2024, 여성가족부

둘째,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①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 ②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 ③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수업료 등을 공제대상으로 규정[29]하고 있을 뿐,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유사 서비스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자녀 돌봄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30]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일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72.1만원[31]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

29)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만 해당

30)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1)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영유아	7.2	0.0	7.7	5.1	37.0	57.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돌봄비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할 경우, 보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잠재적인 출산 희망가구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른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및 친족 등의 도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간병 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

스가 운영 중인 상황임.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신설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와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공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공제대상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부모 등 친족을 통한 양육에 의존하는 가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도 과세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음[32].

둘째,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33],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규모가 제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34],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5%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35]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제지원 제도로는 자녀장려금,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

32)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 중 조부모에 의존하는 이용자가 85.2%이고, 공공・민간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총 11.5%로 조사됨

33)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34) 예산규모 (2023년) 3,546억원→ (2024년) 4,679억원 → (2025년) 4,750억원

35) 정부지원율(중위소득 기준별, %): (75%↓)85% (120%↓)60% (150%↓)30% (200%↓)15%

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table>
<tr><th>세목</th><th>유형</th><th>구체적 내용</th><th>근거</th></tr>
<tr><td rowspan="7">소득세</td><td rowspan="2">비과세</td><td>·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td><td rowspan="2">소득법
§12</td></tr>
<tr><td>·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td></tr>
<tr><td>소득
공제</td><td>·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td><td>소득법
§50</td></tr>
<tr><td rowspan="3">세액
공제</td><td>· 자녀세액공제
<table>
<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td></tr>
<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
</table>
<table>
<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
<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
</table></td><td>소득법
§59-2</td></tr>
<tr><td>·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td><td>소득법
§59-4②</td></tr>
<tr><td>·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td><td>소득법
§59-4③</td></tr>
<tr><td>자녀
장려
세제</td><td>·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td><td>조특법
§100-28
～
§100-31</td></tr>
<tr><td rowspan="2">부가
가치세</td><td rowspan="2">면세</td><td>·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td><td>조특법
§106</td></tr>
<tr><td>· 산후조리원 면세</td><td>부가령
§35</td></tr>
</table>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36]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 한편 예산정책처는 백승아의원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143

36)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억원 등 5년간 총 819억원(연평균 1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이준석 의원안에 의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30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6억원(연평균 27억원) 감소할 것으로 각각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백승아의원안	△143	△152	△162	△174	△189	△819	△164
이준석의원안	△30	△28	△27	△26	△25	△136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